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 서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 월 일	2026. 1. 22.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55
	한국기계연구원	13.1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9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5
	한국식품연구원	23.1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4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03
	한국원자력연구원	22.89
	한국재료연구원	10.30
	한국전기연구원	14.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3.78
	한국천문연구원	19.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0
	한국한의학연구원	22.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9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6.02
	한국화학연구원	20.09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녹색기술연구소	16.3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26
	극지연구소	8.01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93
	세계김치연구소	17.77
	안전성평가연구소	17.34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2개)	광주과학기술원	26.49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4
	울산과학기술원	25.6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18
	한국과학기술원	23.50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99
	한국세라믹기술원	20.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19
	한국원자력의학원	27.0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7.2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고등과학원	19.7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1.67
	나노종합기술원	16.39
	한국뇌연구원	29.70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11
	한국광기술원	20.30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0.7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1.88
	한국소재융합연구원	25.85
	한국자동차연구원	18.3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4.1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2.13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25.15	가톨릭관동대학교	23.87
가톨릭대학교	21.15	강남대학교	12.79
강원대학교	20.20	건국대학교	27.04
건양대학교	28.35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1.05
경기대학교	24.42	경남대학교	26.93
경북대학교	24.83	경상국립대학교	23.62
경성대학교	20.09	경운대학교	7.30
경인교육대학교	12.61	경일대학교	14.49
경희대학교	26.43	계명대학교	22.78
고려대학교	24.34	고신대학교	29.00
광운대학교	25.70	광주대학교	17.31
광주여자대학교	7.39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1.95
국립경국대학교	25.55	국립공주대학교	29.87
국립군산대학교	17.8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7.45
국립목포대학교	17.92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2.66
국립부경대학교	21.04	국립순천대학교	22.12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7.20	국립창원대학교	24.33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4.23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89
국립한밭대학교	27.25	국민대학교	26.01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00	극동대학교	12.99
나사렛대학교	15.06	남부대학교	16.24
남서울대학교	25.24	단국대학교	25.31
대구가톨릭대학교	28.42	대구대학교	20.10
대구한의대학교	26.17	대전대학교	24.70
대진대학교	22.85	덕성여자대학교	25.19
동국대학교	23.75	동덕여자대학교	22.67
동명대학교	28.42	동서대학교	27.84
동신대학교	20.13	동아대학교	25.25
동양대학교	7.91	동양미래대학교	5.00
동의대학교	24.45	명지대학교	23.06
명지전문대학	5.00	목원대학교	17.55
배재대학교	26.69	백석대학교	13.87
부산가톨릭대학교	27.16	부산대학교	18.46
부산외국어대학교	23.25	부천대학교	21.56
북한대학원대학교	5.00	삼육대학교	25.82
상명대학교	27.89	상지대학교	27.44
서강대학교	27.87	서경대학교	16.4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8.00	서울교육대학교	12.82
서울대학교	27.0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20.00
서울시립대학교	27.97	서울여자대학교	29.70
서원대학교	20.58	서일대학교	5.00
선문대학교	26.64	성공회대학교	9.38
성균관대학교	26.30	성신여자대학교	25.20
세명대학교	16.70	세종대학교	25.77
수원대학교	29.87	숙명여자대학교	26.47
순천향대학교	23.86	숭실대학교	26.09
신라대학교	26.76	아주대학교	28.00
안양대학교	18.99	연세대학교	28.84
영남대학교	20.32	영산대학교	27.44
용인대학교	5.00	우석대학교	26.71
우송대학교	11.04	울산과학대학교	5.00
울산대학교	24.14	원광대학교	29.12
위덕대학교	5.00	육군사관학교	14.96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을지대학교	23.63	이화여자대학교	27.55
인덕대학교	5.00	인제대학교	21.88
인천대학교	30.90	인하공업전문대학	19.05
인하대학교	25.15	전남대학교	20.43
전북대학교	22.32	전주대학교	18.46
제주대학교	26.94	조선대학교	29.00
중부대학교	16.17	중앙대학교	22.21
중원대학교	30.07	차의과학대학교	28.84
창신대학교	29.40	청주대학교	17.24
춘천교육대학교	5.00	충남대학교	21.71
충북대학교	21.12	평택대학교	5.00
포항공과대학교	19.74	한경국립대학교	22.97
한국공학대학교	19.49	한국교원대학교	9.7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86	한국농수산대학교	13.6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81	한국예술종합학교	26.49
한국외국어대학교	25.87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0.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6.46	한국체육대학교	15.51
한국항공대학교	25.10	한남대학교	20.65
한동대학교	26.32	한라대학교	15.3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5.04	한림대학교	21.16
한서대학교	22.78	한성대학교	15.30
한신대학교	12.72	한양대학교	23.36
한양여자대학교	13.97	협성대학교	16.19
호남대학교	17.27	호서대학교	25.79
홍익대학교	18.01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40
	삼성서울병원	22.03
	키엘연구원	18.56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7.10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한국나노기술원	17.55
	한국선급	24.52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6.80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학적 상태	재학 / 휴학 / 수료등록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20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명: _____

라.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세금 포함)

구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원
지급률*	%

* 지급률 = 월 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사. 계정책임자 정보

* 필요시 하단 표 추가 삽입 가능

성 명			
소 속 (부서/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으며,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학적 상태	재학 / 휴학 / 수료등록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명: _____

라.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세금 포함)

지급기준월	지급액	지급률*
_월	원	%
_월	원	%
_월	원	%
_월	원	%
_월	원	%
_월	원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사. 계정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부서/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으며,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학적상태	재학 / 휴학 / 수료등록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20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세금 포함)

구분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원
계상률*	%

* 계상률 = 월 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사.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부서/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으며,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 라. (생 략) 5. (생 략)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가. ~ 라.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② (생 략)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 ---------- ---------- ----------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 중 각 개인별 ---------- ---------- ----------

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보안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보안수당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의 총액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접비고시비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1. ---------- 연구개발과제(단,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② (생 략)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③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출연금인 건비계상액을 ----------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4조(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①·② (생 략)	제44조(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

	연기관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생 략)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 월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4항·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과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의 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2. ---------- ---------- ---------- ---------- ------- 제7조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 ---------- ---------- ---------- ---------- 이체된 금액(동일한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제외한다)---잔액 및 당해 연도 발생 이자

	수익---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